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118
----------	-----

제출년월일 : 1996.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도내 「1지역1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중점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내무부 준칙을 근거로 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기금의 재원마련 및 관리·운영
 - 내무부교부세 와 도비로 기금조성
 - 농협과 협약체결로 위탁관리 및 용자지원
- 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자대상사업 선정
 - 기금은 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에 한하여 지원
 - 선정된 명품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해 도 심의확정 지원
- 용자금의 대출한도 및 조건
 - 기준 [농특산물, 민·공예품 : 개소당 1억원이내
 - 향토전통음식 : 개소당 2천만원이내
 - 조건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 지방재정법제110조(기금의 운용등)
- 내무부 준칙(재경13600-261호, '96.4.1)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내 「1지역1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중점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1지역1명품」육성기금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지역1명품」이라 함은 내무부에서 「1지역1명품」으로 선정한 각 시군의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 향토전통음식의 품목을 말한다.
2. 충청북도 「1지역1명품」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하며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투자되는 용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1지역1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1지역1명품」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내무부의 교부세
2. 도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잡수입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시군 「1지역1명품」(이하 "명품"이라 한다)육성사업 참여농어민 및 생산자단체 지원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다.

②기금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해 용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동)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동한다.

②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및 운동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⑤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용자재원) 용자재원은 제4조(기금의 재원)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 (기금의 지원범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품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상품성제고사업(고유상표·포장디자인·용기개발·품질인증제 실시 등)
2. 상품의 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화사업(품질개선 등)
3. 가공공장 운영관리사업(시설자동화, 시설확충, 가공원료구입, 기술개발 등)
4. 생산성 증대를 위한 유통기능제고사업(저온저장고, 선과장, 직판장 설치 등)
5. 기타 각호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대상사업 선정) 기금지원 대상사업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사업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제 10조 (기금운영등 심의)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중요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사항
3. 용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결정
4.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1조 (용자금의 대출) ①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금융기관을 용자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용자금을 대출한다.

②용자금의 대출절차는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결정한다.

제 12조 (용자조건) 용자한도액은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 육성사업은 개소(사업장)당 1억원이내로 하고 향토전통음식 육성사업은 업소당 2천만원이내로 한다.

제 13조 (용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용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연 2%로 한다.

②용자를 받은 사업자가 용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 하였을때에는 기금관리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제 14조 (용자금의 회수) ①용자금을 받은 자가 용자목적외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외에 이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그 상황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용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②용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15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용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 용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대출 및 상환등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반기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7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농정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농정기획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 18조 (결산 및 보고 등)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